## 수강료 감면 규정

감면금액	감면사유	제출서류
전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빙서류 사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입소 증빙서류 사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관련 증빙서류 사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아동양육시설 입소 증빙서류 사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능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작기등 기증자, 기증자의 유족 관련 증빙서류 사본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또는 직계가족 1명
	제 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자유공자증 등 증빙서류 사본
	「독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 증빙서류 사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관련 공문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주관하는 행사	
20%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1명만 적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 수강료 면제는 1가정 당 1명에 한정
-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연 1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면제 적용
- \*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1)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 2)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 \*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수강료 감면) 준용
- \*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면제 혜택이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